

유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유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유·청소년들의 농구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대회 규정의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유·청소년의 모든 지역 생활체육 대회에 적용한다.

제3조(참가자격) 유소년 농구교실 및 학교팀(동호회,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으로 대한민국농구협회 등록을 필한 단체에 한 한다.

- ① 대한민국농구협회 통합경기정보시스템(www.kba-il.kr)을 통해 경기인/팀 등록 및 시도농구협회와 대한민국농구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기인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전문체육선수로 등록한 학생은 참가할 수 없다.
- ③ 등록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등록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이며, 이적/탈퇴/해체에 따른 출전 제한사항은 등록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 전년도 전문체육선수로 등록한 학생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선수 등록 및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 ④ 선수의 이적으로 인하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기간은 1년이며, 적용예시는 아래와 같다. 단, 팀(또는 클럽) 해체로 이적하는 경우에는 타 팀(또는 클럽) 이적 승인된 날부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적 신청일 또는 전 소속팀 탈퇴일 중 빠른 날짜	경기 출전 가능일
2024. 3. 1.	2025. 3. 1.

- ⑤ 모든 종별에 1인 1종별 출전만을 허용한다. (중복출전 절대불가)
- ⑥ 참가연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구분	종별	학년(연령)	선수	지도자
초등부	U7부	초등학교 1학년	인원제한 없음 *단, 대회 출전은 12명까지 가능	1명 이상
	U8부	초등학교 2학년		
	U9부	초등학교 3학년		
	U10부	초등학교 4학년		
	U11부	초등학교 5학년		
	U12부	초등학교 6학년		
중학부	U13부	중학교 1학년		
	U14부	중학교 2학년		
	U15부	중학교 3학년		
고등부	U18부	고등학교 1~3학년		

여자 초등부	여초(저학년)부	여초 1~4학년		
	여초(고학년)부	여초 5~6학년		
여자중학부	여중부	여중 1~3학년		
여자고등부	여고부	여고 1~3학년		

제4조(무자격선수 출장)

- ① 대회 개막 이후 무자격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당해 팀은 몰수 처리되며, 이후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출장이라 함은 경기시작 전 해당 대회 규정에 따라 선수명단(참가신청서 명단 내)을 제출하는 시점을 말한다.
- ② 참가 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③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몰수 처리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다음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제5조(경기규정)

- ① 모든 경기는 전, 후반 10분경기로 한다. (연속경기는 10분간 휴식)
- ② 모든 경기는 all-dead로 하며, 연장전은 2분으로 한다.
- ③ 작전타임은 전반 2회, 후반 2회이며, 벤치에서 데드상황에서만 요청할 수 있으며, 하프타임은 2분으로 한다.
- ④ 참가신청 명단에 없는 사람(감독, 코치, 주무, 선수 등)은 벤치에 착석할 수 없다.
- ⑤ 경기 예정시간보다 10분 지각 시에 몰수 패를 선언한다.
- ⑥ 경기 시작시간이 지나고 10분 이내에 출전 시 T파울과 자유투 1구로 주고 점프볼로 시작한다.
- ⑦ 몰수패는 20:0으로 한다.
- ⑧ 초등부~중학부(여자 초등부, 중학부 포함)는 지역방어를 할 수 없다.

제6조(파울 규정)

- ① 팀 파울은 매 쿼터 8개 이상시 자유투 2구가 주어진다.
- ② 개인파울 5개 이상은 퇴장으로 한다.
- ③ 상대팀 공격 시 과도한 고함으로 공격방해 시 1차 경고, 2차 T파울 선언한다.
- ④ 한 선수가 테크니컬 반칙1개(T파울)와 언스포츠편라이크 반칙(U파울)1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경기의 남은 시간 동안 퇴장한다.
- ⑤ 감독, 코치 등은 과도한 고함이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과도한 행위나 과도한 어필에 대해서 심판은 경고 없이 T파울을 줄 수 있다.
- ⑥ 제5조 및 제6조 이외 모든 파울, 경기 규정은 FIBA룰을 준수한다.

제7조(종별 규정) 종별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유저부(U7, U8, U9, U10)

- 유저부의 경우 3점슛과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은 없으며, 경기시작은 점프볼로 시작하고 각 쿼터 및 연장전은 볼 소유권 화살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 트레블링 3스텝 허용한다. (단, 프런트 3점라인 내는 불허, 악의적인 경우 경고)
- 3초와 5초룰(근접방어) 바이얼레이션은 없다.
- 공격 제한시간은 30초로 한다.
- 자유투 시 볼이 손을 떠나면서 동시에 라인 오버는 허용한다.

② 유고부(U11, U12)

- 유고부의 경우 3점슛과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은 없으며, 경기시작은 점프볼로 시작하고 각 쿼터 및 연장전은 볼 소유권 화살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 공격 제한시간은 30초로 한다.

③ 중학부(U13, U14, U15)

- 중학부는 3점슛과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 규칙이 적용되고, 그 외의 모든 규칙도 FIBA 룰을 적용한다.

④ 고등부(U18)

- 모든 경기규칙은 FIBA 룰을 적용한다.
- 단, 경기시간은 전.후반 10분으로 하되, 대회참가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모든 종별에 1인 1종별 출전만을 허용한다. (중복출전 절대불가)

제8조(사용구) 시합구는 대한민국농구협회 생활체육대회 공식구인 ‘몰텐’브랜드의 공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소년부, 여자부: B6G4500 / 중학부, 고등부: B7G4500)

제9조(벤치 착석 및 지도행위)

- ① 팀 벤치에는 사전에 통합경기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참가신청을 완료한 경기인(감독, 코치, 주무, 선수 등)만 착석할 수 있다.
- ② 모든 선수는 경기 전 신분증을 지참한 상태로 사전검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 미등록 선수 및 학부모 등 관중의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퇴장 조치한다.
- ④ 각 팀 연령별 총 감독은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은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스포츠평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⑤ 징계중인 「지도자, 임원」 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⑥ 경기 중 지도자의 욕설, 훈계, 비방, 지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선수들 플레이에 대한 격려 및 칭찬은 허용된다.
- ⑦ 경기 중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욕설, 비난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심판 및 경기원의 판단으로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i. 1차 : 구두 주의
 - ii. 2차 : 벤치 착석 금지 및 체육관에서 추방
- ⑧ 벤치 착석 금지 및 체육관에서 추방 조치를 받은 지도자가 불응하여, 3분 이내에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그 팀은 해당경기에 한하여 몰수 처리한다.

제10조(제재 및 징계 등)

- ① 경기장 내 폭언 및 폭력행위를 한 자는 퇴장 처리 후 대회 임원(임원, 감독관, 심판 등)으로 구성된 소청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② 선수 간 폭력/폭언, 부정선수 출전, 심판폭언 선수 및 임원, 경기보이콧,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 시상을 포기, 참가를 포기하고 무단이탈한 팀에 대해 해당선수/지도자는 경기일로부터 36개월, 단일팀은 1년간 해당 대회의 주최/주관단체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대회에 출전을 정지하며,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다.
 - ※ 감독, 코치, 선수명단에 있는 선수 전원 해당
 - ※ 징계절차 없이 대회조직위원회(대회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함.
- ③ 선수, 감독, 코치가 퇴장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 ④ 학부모로 인한 소란, 코트 난입 등으로 경기가 3분 이상 지체되는 경우 해당 팀은 대회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며 최대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⑤ 타임 요청 후 정식으로 진행되는 질의가 아닌 지나친 언행 및 항의를 하는 감독, 코치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재발 시 퇴장 적용
- ⑥ 관중이라도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 시 관중을 퇴장 시킬 수 있다.
- ⑦ 본 규정 제9조 제1,2,3,4,5항에 해당되는 경우와 대회에 일어나는 문제 상황 발생 시에는 대회 임원(임원, 감독관, 심판 등)으로 구성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제10조 제1,2,3,4,5,6항의 과도한 행위나 이외에 문란행위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회부하여 징계를 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소청) 경기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의 제기는 경기종료 때 주심이 기록지에 서명하기 전에 즉시 서명하여야 하며, 30분 안에 해당 팀은 서면 설명문서 제출과 공탁금 10만원을 주최 측에 납부하면 이의 신청에 대한 업무는 대회 소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심판)

- ① 대한민국의농구협회가 발행하는 심판자격증을 취득한 후 협회에 심판 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여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전 종별, 2심제로 진행한다.

제13조(경기원)

- ① 대한민국농구협회가 발행하는 경기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협회에 경기원 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한민국농구협회가 발행하는 심판자격증(3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경기원 및 통계원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선수의 출전 및 장비)

- ① 출전 선수는 반드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학교생활기록부 포함)을 지참하여 경기 개시 30분 전에 감독관 및 경기원으로부터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되거나 변형, 위조가 의심되는 등록증으로 판단될 경우 검인할 수 없다.
- ② 각 팀은 모든 선수가 상·하의 색상이 동일한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양 팀의 유니폼(상의, 하의) 색상이 동일한 경우 코인 토스나 추첨으로 결정하여 팀조끼나 보조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단, 유니폼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을 경우 물수패를 선언한다.
- ③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0번~99번 내의 번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④ 각 팀 유니폼에 담배, 주류 등의 유·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부착은 불가하다.
- ⑤ 출전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통합경기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오더지에 명시되어 있는 등번호를 기재하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퇴장 조치하여 해당 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⑥ 출전선수는 실내용 농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부드럽고 경량의 폭신한 물질로 만들어진 머리보호대, 안면보호대, 무릎과 팔 보호대와 같은 위험하지 않은 보호장비는 허가된다.
- ⑦ 모든 선수는 시계, 반지 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착용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된 안경테 외의 보호안경은 착용이 가능하다.
- ⑧ 모든 선수는 양말, 이너웨어, 액세서리 색상도 통일되어야 한다.(권고사항)

제15조(재경기 실시)

-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경기장 대관 상황, 정전에 의한 조명 문제 등)로 인해 경기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 ② 득점자가 있을 때는 중단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 i.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 시점과 동일해야 한다.

- ii. 순연경기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득점, 도움, 파울 등)은 유효하다.
- ③ 득점자가 없을 때는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 i.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 ii. 경기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 ④ 재경기는 해당 대회 주최/주관 단체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 ⑤ 심판 및 경기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사항)

- ① 대회 주최/주관단체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는 가입된 보험 약관에 한하여 보상한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상해 및 기타사고에 대해서 참가팀이나 참가자가 별도의 보험 등 안전,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대회 주최/주관단체는 현장에 구급차 1대와 의료진(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1명 이상을 대기시키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인근병원으로의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모든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구급차와 의료진은 현장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미배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회 주최/주관단체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 ③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 ④ 참가팀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 반드시 건강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 ⑤ 제16조 제3, 4항 및 참가선수, 참가팀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수 및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제 17조(유의사항)

-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타당한 사유 없이 경기 시작시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실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회 주최/주관단체에서 결정한다.
- ② 참가팀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제 23조(기타)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 주최/주관단체에서 결정 및 시행할 수 있다. 끝.